

상담센터 상담 규정

제정 2012. 6.21

개정 2014.11. 2

개정 2017.12.22

제1조(운영 목적) ① 상담센터는 포항공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구성원들을 위한 학내 지원 체계의 일환으로서 설립된 전문 기관이다.

② 상담센터는 상담을 받는 자(이하 “내담자” 라 한다)의 학업 수행 및 대학생활 적응 향상, 직무 수행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전인적 성장을 도모한다.

제2조(상담서비스) ① 현재 본 대학에 학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부생 및 대학원생, 본 대학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직원 및 연구원은 상담센터에서 제공하는 상담 및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상담 서비스는 학업 스트레스, 진로, 대학생활 적응, 정서적 어려움, 대인관계, 가족, 행동 및 습관, 실존, 성격, 성정체성, 성희롱·성폭력 관련 피해구제 등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2)

③ 상담 서비스는 내담자가 자발적으로 요구할 때 시작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학사경고 지원상담은 의무 상담으로 실시한다.

제2조의2(상담 서비스의 특례) ① 본 대학 구성원의 권리가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우려가 명백하여 긴급한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담센터가 그 권리구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상담센터장이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담센터는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상담 서비스 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교내·외 유관기관에 대한 권고 또는 협조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② 제1항의 침해 여부 및 구제 필요성에 대한 판단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인정되는 권리를 준거로 삼는다. (신설: 2017.12.22)

③ 상담센터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권고 또는 협조요청 이전에 사안의 공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에 관한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④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교내 관계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되, 그 이행이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상담센터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제2조의3(상담 서비스를 위한 자문) ① 상담센터는 본 대학 구성원에게 양질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상담자 이외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신설: 2017.12.22)

②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

정」에 따라서 상담센터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22)

③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상담센터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안에 관한 조사 등 업무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17.12.22)

제3조(비밀보장 및 상담자 윤리) ① 상담센터는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자 윤리 강령을 지킨다.

② 한국상담심리학회의 상담전문가 윤리강령에 근거하여, 상담센터 구성원은 내담자에 대한 상담 내용 및 모든 기록에 관하여 비밀보장의 의무를 준수한다. 다만,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하여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처리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담센터는 내담자의 동의 없이 내담자와 관련한 어떠한 정보도 유출하지 않는다. 단, 법에 의하여 요구 받거나 내담자 또는 타인의 신상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긴급한 상황은 예외로 한다.

제4조(위급상황) ① “위급상황”은 자신 및 주변 인물의 생명이나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② 상담센터는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교내·외의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담과정) ① 상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개인상담 신청서(포항공과대학교상담센터 규정 양식)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접수된 개인상담 및 심리검사는 접수된 순서와 상담 신청인의 요구 및 문제 유형에 따라 한 명의 상담자에게 배정된다. 상담 신청인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상담자를 다시 지정할 수 있다.

③ 접수된 상담을 배정받은 상담자는 상담 신청인에게 전화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상담 시간을 정한다. 상담 신청인이 3회 이상 전화 또는 이메일 연락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접수된 상담은 보류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상담의 내용을 상담자가 상담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내담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내담자를 상담센터 내외의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

⑤ 상담신청자가 내담자가 되기로 동의하면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가 성립되며 상담이 진행된다.

⑥ 상담을 통하여 호소 문제가 해결 또는 호전된 경우, 상담자와 내담자의 동의하에 상담을 종결할 수 있다.

⑦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정신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내담자에게 정신의학적 치료를 병행하는 것을 권유할 수 있다.

⑧ 상담과정에서 정신의학적 치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심각한 사례의 경우는,

본 규정 제8조에 의거하여 진행한다.

제6조(내담자의 상담 약속 취소 등) ① 반복되는 취소, 약속변경, 또는 결석은 사례별로 담당 상담자의 판단에 따라 적절히 대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내담자가 예고 없이 연속 3회 이상 상담 약속 시간에 오지 않을 경우, 상담자는 이메일을 통하여 상담이 종결될 수 있음을 알리고 이메일에 내담자가 응답하지 않으면 사례를 종결한다.

제7조(상담자 변경) ① 상담자의 이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담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원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상담자 변경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내담자가 새로운 상담자와 상담을 지속할 의사가 있는지를 논의한다.

② 상담자 변경 시, 원 상담자는 의뢰 받는 상담자에게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상담 기록을 제공하여 원활하게 상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8조(심각한 사례에 대한 대처) ① 상담센터의 상담자들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심각한 사례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정신의학적 치료를 내담자에게 요구한다.

② ‘심각한 사례’라 함은 내담자의 심리적 신체적 상태가 상담센터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고 정신의학적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사례를 의미하며, 심각한 사례를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자살의 위험성이 매우 높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은 사례
2. 심각한 정신과적 장애를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 사례
3. 이밖에 정신의학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명백히 판단되는 사례

③ 내담자가 상담센터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정신의학적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 상담센터는 해당 병원 및 담당 의사와의 협력 하에 내담자에 대한 상담을 계속한다.

④ 내담자가 상담센터의 정신의학적 치료 권고를 따르지 않고, 내담자의 상태가 상담을 통해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담센터는 내담자에 대한 상담을 중단하고 관련사항을 해당 처장 및 지도교수(또는 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시 학생생활위원회 등의 관련 위원회 소집을 요청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2년 6월 21일부터 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년 10월 2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7년 12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